

검 토 보 고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 조례안은 1998년 8월 2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지방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재산정한 결과 파주시의 1단계 정원감축 규모는 129명으로 산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형평성 있게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해 나가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시본청 정원 401명을 406명으로 5명 증원(안제2조제1호)
- 나.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17명으로 2명 감축(안제2조제2호)
- 다. 직속기관 정원 143명을 98명으로 45명 감축(안제2조제3호)
- 라. 사업소 정원 49명을 22명으로 27명 감축(안제2조제4호)
- 마. 출장소 정원 10명을 9명으로 1명 감축(안제2조제5호)
- 바. 읍·면·동 정원 344명을 286명으로 58명 감축(안제2조제6호)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현재 966명(현행 조례에는 966명으로 되어 있으나 부시장이 '98. 7.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로는 967명임)으로 되어 있는 시공무원의 정원을 128명(실제로는 129명)이 감축한 83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 소속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 시본청 정원이 401명에서 5명이 증원된 406명으로
(실제로는 402명에서 4명이 증원)
- 의회사무국 정원이 19명에서 2명이 감축된 17명으로
- 직속기관의 정원이 143명에서 45명이 감축된 98명으로
- 사업소의 정원이 49명에서 27명이 감축된 22명으로
- 출장소의 정원이 10명에서 1명이 감축된 9명으로
- 읍·면·동 정원이 344명에서 58명이 감축된 28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직급별 감축인원은

- 5급의 경우 본청 과 폐지로 1명, 부읍장 폐지로 3명,
성병진료소 폐지에 따른 의사 감축 1명등 5명이며
- 6급의 경우에는 본청 계 통합으로 4명, 읍·면·동의
부면장·과장·사무장제 폐지로 12명, 군내출장소 부소장 및
영장출장소 폐지로 2명, 읍·면의 계 통합으로 8명,
보건소 계 통합으로 1명, 사업소 폐지로 3명등 총 30명임.

- 7급 이하 일반직 직원의 경우는 영장출장소 폐지 및 읍·면
인원 감축으로 10명, 보건소 계 통합 및 보건지소 폐지로 16명,
사업소 폐지로 8명등 34명이며
-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 4명임.
-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농촌지도소 계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 8명이며
- 기능직 및 고용직의 경우는 사업소 폐지로 17명,
의회사무국 사무보조원 감축 2명, 청소차량 운전원 감축 5명,
문서 택배제 운영에 따른 읍·면 사역원 13명,
자운서원 및 청서관리 위탁에 따른 잉여인력 5명,
기타 기능 쇠퇴분야 감축 6명등 총 48명임.

○ 금번 감축인원 129명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상의 자치
단체별 정원감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 책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제약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으나

○ 인원 감축은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감축대상자 선정에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축 인원내 대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한다고 하나 공직을 평생 직장으로 알고 근무하다 줄지에
직장을 잃게되는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과
상처를 줄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들의 충격과 아픔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행정누수 현상등이 없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감축되는 인원을 2000년 말까지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나 동 조례안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바 조례 부칙에 정원의 인력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